

제 목	국 문	우리 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법의 비교연구 -각종 국내법, McBride법, 미국 의학협회(AMA)기준법을 중심으로-		
	영 문	A Comparative Study on Evaluation Methods of Permanent Impairment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창옥, 손미아,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영 문	Chang Ok Rhee, Mi A Son, Ok Ryun Moon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Public Health, S.N.U.		
분 야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및 재해	발 표 자	이 창 옥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3 년 11 월			
<p>1. 연구 목적</p> <p>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체장해 평가방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각종 신체장해 평가방법의 비과학적인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1개 종합병원의 장해진 단서와 1개 손해보험회사의 장해판정에 대한 소송사례들을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신체장해 판정법에 실제 적용하여 비교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살펴본 후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1) 연구 대상 자료</p> <p>① 신체장해 판정기준, 규정과 보상에 관한 국내 법규들: 근로기준법, 국가배상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을 위시한 17개 국내법규와 법원 판결시 사용하는 McBride법, AMA 기준법등</p> <p>② 각나라의 신체장해평가 기준지침들:미국의 McBride법,AMA기준법(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영국의 Blesma,프랑스의 Bareme,일본의 근로기준법 등</p> <p>③ 1개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와 진료기록 자료: 1987년 1월-1993년 5월까지 감정한 신체장해 진단서 및 감정서 105건 1개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장해 청구소송사례 기록자료: } 합계:308건 1990년 1월-1992년 12월까지 소송사례중 1992년에 종결된 사례 203건</p> <p>2) 연구방법</p> <p>① 각종 신체장해에 대한 국내법의 현황과 문제점, 각 방법의 비교분석: -각종 국내법, McBride식 방법, 미국의학협회(AMA)기준지침을 중심으로 -</p> <p>② 구체적인 신체장해 판정사례를 각각의 신체장해 판정법에 실제 적용했을 때 장해율의 변화 양상과 문제점들을 분석 검토: 신체장해 감정서와 진료기록들을 2인 의 재활의학과 의사와 연구자가 함께 각각 다른 판정기준 방법을 적용한 후 그 결 과를 비교분석</p> <p>③ 각종 문헌 고찰을 통해 각국의 신체장해의 판정기준과 적용현황과 판정에 관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신체장해 판정에 대한 기준법의 비교</p>				

3. 연구 결과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체장애 판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의 장애판정 기준 14등급을 사용하고 있는 17개의 국내법과 Mc Bride법, AMA법등이 있는데 각기 여러가지 결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적용 기준이 달라 많은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신체장애 등급표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신체장애 판정이나 노동능력상실율의 본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신체장애로 인한 보상·청구소송시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McBride방법은 1963년 출판이후 30년간 전혀 바뀌어 지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AMA법에 의한 신체장애 판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노동능력 상실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다.

② 병원 신체감정 사례 총 105건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장애판정의 사고종류는 자동차사고 74명(70.5%), 산업재해 22명(20.9%), 기타(의료과오,질병등) 9명(8.6%)이고, 신체부위별로는 98명(93%)이 2개 이상의 복합장애이었다.

기준에 판정된 McBride법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신체장애율로 전환한 결과와, AMA기준법을 적용한 신체장애율과의 차이의 분포를 보면, 차이(AMA>McBride신체 장애율)가 20이상인 경우 8명(7.6%), 10-19가 10명(9.5%), 1-9가 33명(31.5%), 차이가 없는 경우가 25명(23.8%), AMA<McBride인 -1에서-12인 경우가 29명(27.6%)으로 신체장애율만을 비교할 경우 McBride법에서 신체장애율이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차이가 -5에서 5인 경우는 72명(68.6%)이었고, AMA = McBride로 차이가 없는 25명(23.8%)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외상후 뇌손상으로 인한 심한 뇌·중추신경장애의 경우가 10명 (9.5%), 척수신경 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경우가 11명(10.5%), 10%미만의 수족장애가 4명(3.8%)으로 심한 장애나 경미한 장애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4. 고찰

신체장애의 판정은 각 나라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많으며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리 판정되기도 하는데 판정기준에는 의학적인 신체장애(physical impairment)평가 뿐만이 아니라 이로인한 능력저하(disability), 노동능력 상실율(disability rate), 사회적 불이익(handicap)에 관한 평가를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McBride법은 1936년 정형외과 교수 McBride에 의해 만들어진 신체장애 평가방법으로 질환별, 직업별로 노동능력 상실율을 산출한 것으로 당시의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평가이었을 지는 모르나 1963년 출판된 것으로 현재의 직업분류가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직업외의 성, 연령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노동능력 상실과는 거리가 있다.

AMA법은 미국 의학협회에서 1958년부터 1990년까지 3차례 계속 개정·보완하였고 72명의 각과 전문의로 하여금 각각 자기분야의 신체장애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신체장애율을 결정하여 이를 이용한 방법이다. 모든 장애에 대하여 신체장애율을 명시하여 장애분류가 정밀하고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평가기준이 합리적이고 복합장애의 평가도 가능하나 노동능력 상실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직업, 연령, 성별 등을 다시 보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등 각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체장애율 기준표를 제시하여 지침을 정한 뒤 신체장애율을 산정한 후 연령, 성, 직업 등을 보정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